

01 열려라 중국

- 중국 사회보험법 관련 검토 (김이태 변호사)

05 생생 러시아

- 러시아 국유재산 민영화 한국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08 주목! 이 판례

- 여러 건의 부동산 신탁계약이 별도 체결된 경우, 사해신탁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12 최신 법령

-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요건 및 기준 완화 등
-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외진출 규정 정비 등

14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 [Global 트렌드(베트남)]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 (변희경 변호사)
- [Global 트렌드(일본)] 80엔대 붕괴 압박...해외 진출 가속화 (김홍영 전문위원)
- [Global 트렌드(브라질)] 100조 원대 시장...세계 각국 경쟁 치열 (정철 변호사)
- [Global 트렌드(캄보디아)] 농업 투자 활기...법률문제 잘 따져야(유정훈 변호사)

17 지평지성 소식

- 영문 사명 및 도메인/이메일 주소 변경 안내

18 업무동향

- 라오스 대표적인 한상기업인 코라오홀딩스의 한국 상장 업무를 대리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 정책금융공사 대리하여 국적취득부나용선구조의 선박금융거래 성사
- 쉐디오를 대리하여 멘츠플라이로부터 6,400만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 성사
- 미래에셋캐피탈을 대리하여 금융기관 최초로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설립인가 획득
- 호주 로펌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자문 중
- IBA 동경국제포럼에서 '한국에서의 효율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 방법'을 주제로 발표

25 지평지성 단신

- 지평지성, '2010 사랑의 연탄 나눔' 참여
- 강성, 최진숙, 이소영 변호사 '2010년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아카데미' 참석
- 최승수 변호사,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 토론 참석
- 김성수 변호사, 서울고검 송무실무연구회 월례모임에서 '보건의료법 및 노동법 분야의 최근 쟁점' 강의
- 명한석 변호사, 「2010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원개발사업진출 관련 Country Risk 최소화 방안' 발제
- 정원 변호사, 경제사학회 주최 연말 학술대회에서 '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발표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열려라 중국)

중국 사회보험법 관련 검토



김이태 변호사

I. 서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10년 10월 28일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보험법을 공포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법은 중국 최초의 종합적인 사회보험기본법으로서 사회보험의 원칙, 적용 범위, 운영 및 감독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회보험법의 시행으로 현재의 제도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I. 사회보험법의 주요 내용

1. 사회보험료의 징수 및 관리 강화

실무상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최저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사회보험법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1) 사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단위가 납부할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납부할 금액이 확정됩니다(제62조).

(2)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단위의 예금계좌를 조회하여 사회보험료로 이체하거나 사용단위의 재산을 압류 및 경매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즉,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적시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기한부 납부 또는 보완 납부를 명령하고, 사용단위가 이러한 기한이 경과하여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개설된 사용단위의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금 이상 유관 행정부서에 사회보험료 이체결정을 신청하여 그 계좌개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개설된 사용단위의 예금계좌에서 사회보험료를 직접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단위의 예금계좌의 잔액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에 부족한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당해 사용단위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납부유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한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법원에 신청하여 사용단위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에 상당한 재산을 압류, 경매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63조).

(3) 사회보험 미등기, 사회보험료 미납에 따른 벌금의 부과도 강화되었습니다.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단위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에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제84조). 또한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적시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기한부 납부 또는 보완을 명령하는 동시에 체납한 날로부터 일당 0.05%의 체납금을 징수하며, 사용단위가 기한이 경과하여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유관 행정부서는 체납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제86조).

2.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지역 이전 가능

사회보험법은 보험가입자가 거주지를 이전해 취업할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제도를 수정하여, 보험료 납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보험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사회보험법에서는 개인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서 취업을 하는 경우,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관계는 본인과 함께 이전하며, 보험료 납부 연한은 누계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제19조, 제32조, 제52조).

3. 기본양로보험의 전국 통합 관리 목표 설정

지금까지의 사회보험기금은 지역별로 분할되어 지역단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기금의 전국적인 이전 및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법은 기본양로보험기금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전국적인 통합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제64조). 이러한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전국 통합 운영으로 지역 발전의 불균형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회보험법에서는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전국적인 통합의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는 국무원이 정하도록 하여, 제도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

사회보험법은 부칙에서 도시에서 취업하는 농촌거주민은 사회보험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함을 명시하였습니다(제95조).

또한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도 사회보험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다고 규정하였으나(제97조), 해석상 외국인에 대하여 사회보험법 적용이 강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III. 결론

사회보험법의 시행으로 사회보험료의 징수 및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양로보험 등의 지역 이전이 가능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인 제조업계의 인건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한 노사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들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을 숙지하고,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보험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Jipyong & Jisung](#)

(생생 러시아)

러시아 국유재산 민영화 한국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11월 27일자 러시아 연방정부(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연방재산 민영화계획 및 2011-2013 연방재산 민영화 기본방향(이하 '민영화계획')을 확정 승인하여 2010년 12월 2일 고시하였습니다.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는 외국인투자자와 산업경제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예산적자를 메우고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본 민영화계획을 주도하였으며, 이번 민영화계획의 실행과 감독업무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민영화계획에서 연방재산의 민영화는 러시아 경제가 혁신적인 발전단계로 전환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중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각 부분에서 정부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비중을 점차 감소하는 일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민영화 절차를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2013년도 연방재산 민영화부분 국가의 주요정책은 1) 신기술을 기반으로 주식회사 발전에 예산외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 조성, 2) 민간투자자들의 혁신이니셔티브를 발전 촉진하기 위한 국가경제부분 축소, 3) 기업운영기법의 향상, 4) 유가증권시장발전 촉진, 5) 러시아 경제의 전략부분에서 통합구조 구축, 6) 연방정부 예산 수입편성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러시아 정부는 3517개 연방국영단일기업 재산의 소유권자이자, 2950개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연방정부가 주식을 소유하고 주식회사의 산업분포를 보면 기계산업 245개, 경공업 11개, 식품산업 46개, 인쇄출판산업 158개, 철강산업 31개, 화학·석유화학산업 36개, 목재산업 35개, 건설 160개, 농업 397개, 운송통신 269개 등입니다. 그리고 주식보유비율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 연방정부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1757개, 50~99.99%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138개, 25~49.99%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358개 그리고 2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697개에 이릅니다.

러시아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방국영단일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러시아 대통령령으로 전략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제외됩니다. 이 기간 중에 우선적으로 기계산업, 농업복합산업체, 교통산업, 건설복합산업체 등의 연방국영단일기업들이 민영화 될 예정이며, 주식회사 중에서 우선적으로 전략기업목록에 편입된 기업을 제외하고 해당 주식회사의 총 주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설, 농업, 화학, 석유화학, 인쇄출판산업, 교통, 지질, 해상 및 항공교통, 기계산업 부분 주식회사들의 주식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1-2013년도에는 연방국영단일기업은 총 114개가, 그리고 주식회사는 809개가 매각될 예정입니다.

민영화 자산 중에 최고로 손꼽는 매각대상은 '아파지트 주식회사', '프라스비쉴니에 출판사', '시비리 항공', '아르항겔스키 트롤리 플롯', '울랴놉스키 자동차', '무르만스키 어업항만', '동부항만', '알마즈니 미르' 등입니다.

이외에도 대통령과 러시아 연방정부의 개별 결정에 따라 경제 각 부분에서 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의 주식을 민영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이 기간 중 많은 석유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로스네프지의 주식 25% 마이너스 1주를 포함하여, 수력발전회사 '루스기드로' 주식 7.97% 마이너스 1주, 전력망 회사 'FSK' 주식 4.11% 마이너스 1주, 조선사 '소브콤플로트' 주식 50% 마이너스 1주, 최대 상업은행 '스베르뱅크' 주식 7.58% 마이너스 1주, 2위 상업은행인 '대외무역은행(VTB)' 주식 35.5% 마이너스 1주, '통합곡물회사(OZK)' 주식 100%(2012년까지), '로스아그로리징' 주식 50% 마이너스 1주(2013년 이후), 국영철도회사 'RZD' 지분 25% 마이너스 1주(2013년 이후)가 매각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예를 들어 2위 상업은행인 '대외무역은행(VTB)' 주식 35.5% 중 10%는 2010년에 매각하고, 2011년에 10%, 2012년에는 15% 마이너스 1주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를 자문사로 고용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은행을 제외하고 대기업들의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및 외국계 금융기관-Credit Suisse, Deutsche Bank, JPMorgan,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Goldman Sachs을 자문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민영화계획에 따라 2011-2013년도 정부소유 기업들의 민영화 대금은 약 1조 루블(약 322억 달러)을 초과할 전망이고, 이러한 민영화(대기업 주식제외)로 인해 연방정부 예산 수입은 2011년도에만 60억 루블에 이르고, 2012, 2013년에는 각각 50억 루블의 예산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년간 러시아 연방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민영화 결과로 약 160억 루블(약 4.83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높은 투자매력을 가진 러시아 대기업들의 지분매각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정부예산 수입은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도 한국과 러시아간의 무역량은 17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금년 상반기의 무역량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2%나 성장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만 러시아에 투자한 한국 자본은 총 6억 달러를 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족한 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중앙아시아, 동유럽을 포함한 러시아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진행될 러시아 정부의 민영화계획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다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미 러시아 시장에서 검증된 선도기업들의 민영화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Jipyong & Jisung](#)

(주목! 이 판례)

여러 건의 부동산 신탁계약이 별도 체결된 경우, 사해신탁 여부의 판단 방법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1. 판결의 취지

토지와 그 지상의 신축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이 시기를 달리하여 별도로 체결된 경우, 건물 신탁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여부는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사실관계

A회사는 2003. 3.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90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금융기관 및 시공사인 B건설과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약정서에서는 'A회사는 건물 보존등기시 대출원리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보존등기와 동시에 담보신탁(또는 처분신탁)을 경로키로 한다'고 하였으며, A회사는 2003. 3. 27. 피고(신탁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부지가 될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제1차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3. 3. 31. 위 토지에 관해 피고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회사는 2004. 5. 17. 피고와의 사이에 제1차 신탁계약을 변경하여, '이 사건 상가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시까지 A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완제되지 않았을 경우, 보존등기와 동시에 미분양물건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며, 2004. 8. 13.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4. 9. 10.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신축건물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제2차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건물 전부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A회사는 제1차 신탁계약 체결일과 제2차 신탁계약 체결일 사이인 2004. 8. 13.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3. 판결의 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회사는 2004. 9. 10.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납부기한을 2004. 9. 12.까지로 하는 고지서를 발급받았으나,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상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2004. 8. 13. 당시에는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과 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① 2003. 3.경 체결한 사업약정서는 A회사와 금융기관, B건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신탁회사)는 그 당사자가 아니고, ② 제1차 신탁계약은 이 사건 상가부지가 될 토지에 대한 부동산관리신탁에 지나지 않으며, ③ 2004. 5. 17.자 변경약정과 사업약정서 제17조 제2항은 '이 사건 상가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시까지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완제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조건부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에 불과하여 향후

체결할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 신탁기간, 수익자 등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전혀 정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과 종전의 일련의 위와 같은 약정은 동일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사해의사 등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은 종전의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이 사건 상가 신축건물 61개 점포에 대한 신탁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인 제2차 신탁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i) 토지와 신축건물 모두에 대한 신탁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는 사업약정서는 신탁회사가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ii) 각 신탁계약은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한 계약이 각각 별개로 체결되어 있으며, iii) 사업약정서와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은 신축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조건부'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로써 당연히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사업약정서 및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한 각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모두 별개의 법률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초기에는 신축건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에 시기를 달리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될 수 밖에 없는데,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부동산개발사업의 구조가 다소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향후 부동산개발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주들은 건물이 완공되어 그에 대한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성립하는 채권의 채권자가 제기하는 사해행위 취소를 염려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참여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사업약정이나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에서는 신축건물에 대한 제2차 신탁계약이 별도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도 볼 수 있으므로, 신축건물에 대한 모든 추가 신탁계약에 확대 적용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위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약정서나 신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 및 표현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상 판결 이후의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2차 신탁계약의 사해행위성을 별도로 판단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107398 판결). 그런데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이미 A회사에 대한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A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았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5325 판결).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바,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Jipyong & Jisung

(최신 법령)

1.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요건 및 기준 완화 등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0509호, 2010. 12. 2. 시행)

1. 금융지주회사의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인가받으려는 자로서 그의 최대주주가 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인 경우에는 사업의 지속성 관련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 단서).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지방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주주심사대상을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에서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축소하였습니다(제5조 제3항 제5호).
3. 금융지주회사 인가 및 대주주변경 시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소수지분보유주주까지 심사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자를 대주주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제5조 제3항 제6호).
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신속하게 국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외국법인을 손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는 경우를 승인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제14조 제1항).
5. 다운로드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0509호, 2010. 12. 2. 시행)

2.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외진출 규정 정비 등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8. 시행)

1. 개정 은행법 시행(2010. 5. 17. 공포, 2010. 11. 18. 시행)에 대비하여 시행령 위임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주요 내용이 시행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모범기준에 규정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대부분이 개정 은행법으로 격상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거래관계 등의 범위,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자의 범위 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었습니다(제15조).
3.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 신설계획을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사전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바, 개정 시행령은 이와 관련하여 경영건전성(은행의 BIS비율, 경영실태평가 등), 해외진출방식(일정 투자적격미만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인수·합병), 업무범위(은행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등), 진출대상국가(일정 투자적격미만 국가 또는 미수교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제3조의3).
4. 은행법상 은행의 겸영업무를 (i) 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무, (ii) 타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iii) 그 밖의 업무 등으로 정비하였는바, 개정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허용, 부수업무로 규정되어 있던 국채증권 등의 인수·매출업무를 겸영업무로 재분류 등)하였습니다(제18조의2).
5. 다운로드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8. 시행\)](#)

Jipyong & Jisung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 (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월간 지평지성 뉴스레터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달의 기고]



변희경 변호사

hkbyun@

jipyong.com

[Global 트렌드]

내년도 베트남 투자 환경 전망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

어느덧 계절이 11월에 접어들었다. 기업들은 다가오는 새해인 2011년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다.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1억 명의 소비 시장을 가진 베트남에 이미 투자했거나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베트남의 내년도 외국인 투자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 환경은 몇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법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이 문제가 된다.....

[PDF](#) [e-Link](#)



김홍영 전문위원
hykimu@
jipyong.com

[Global 트렌드]

엔고 시대 관전 포인트

80엔대 붕괴 임박...해외 진출 가속화

엔·달러 환율이 11월 1일 1달러에 80.59엔을 기록, 달러 대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5년 4월 19일의 달러당 79.75엔에 근접했다. 11월 들어서는 80~81엔대 사이에서 엔·달러 환율이 오르내리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9월 14일 1달러에 82엔대를 찍자 다음날인 15일 6년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 약 2조 엔의 엔화를 매도했다. 이어 10월 5일에는 사실상의 제로 금리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고'라는 큰 파도를 막는 데는...

[PDF](#) [e-Link](#)



정철 변호사
cjeong@js-
horizon.com

[Global 트렌드]

SOC 투자 기회 열린 브라질

100조 원대 시장...세계 각국 경쟁 치열

브라질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루~캄피나스 간 고속철도 건설(TAV Brasil) 사업 입찰서 제출 일자가 11월 29일로 결정됐다. 브라질 육상교통청은 12월 1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는 등 연내에 업체 선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 일본철도 등 일본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프랑스 알스톰(Alstom), 독일 지멘스(Siemens) 등이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등 15개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도...

[PDF](#) [e-Link](#)



[Global 트렌드]

농업 투자 활기...법률문제 잘 따져야

유정훈 변호사

yoojh@

jipyong.com

캄보디아 상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버려진 늪지와 개발되지 않은 넓은 땅들이 보인다. 그때마다 왜 이 넓은 땅이 개발되지 않고 버려져 있는지 의아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들을 캄보디아에 보내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이전하고 농지를 선점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 최근 들어 농업 및 임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한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2006년도 부터 불기 시작한...

[PDF](#)

[e-Link](#)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 (홈페이지)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 (PDF)

Jipyong & Jisung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지평지성 소식)

영문 사명 및 도메인/이메일 주소 변경 안내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고객의 편의를 돕고 당사 국문 및 영문 사명의 일원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영문사명과 홈페이지 도메인 및 이메일 주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법무법인 지평지성 새 로고



2. 변경 내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12 월 1 일부터) |
|----------|--------------------|-----------------------------|
| 영문 사명 | JISUNG HORIZON | JIPYONG & JISUNG |
| 홈페이지 도메인 | www.js-horizon.com | www.jipyong.com |
| 이메일 주소 | @js-horizon.com | @jipyong.com |

※국문 사명은 변경 없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도메인과 이메일 주소는 병행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Jipyong & Jisung

(업무동향)

라오스 대표적인 한상기업인 코라오홀딩스의 한국 상장 업무를 대리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지평지성이 대표적인 한상기업인 코라오홀딩스의 한국 상장 업무를 대리하여 지난 11월 30일자로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였습니다. 코라오홀딩스는 상장 당일 1,360만주의 폭발적인 거래량을 기록하며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상기업으로는 처음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한 코라오홀딩스는 현대차그룹의 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으며 라오스 최대의 자동차 기업인 코라오디벨로핑(KDC, Kolao Developing Co., Ltd.)을 100% 보유한 지주회사입니다. 코라오디벨로핑은 라오스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 처음 상장한 라오스기업이 되었으며, 라오스 자본시장 발전과 한국 자본시장 국제화 측면에서도 대단히 의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라오홀딩스가 소속된 코라오그룹은 종합금융사 '인도차이나뱅크', 전자제품 유통사 'K플라자'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한국경제 - 증시 데뷔 코라오 "교포기업 성공모델 되겠다" (2010. 11. 30.)
- 한겨레 - 오세영 코라오그룹 회장 '한상' 출신 첫 코스피 입성 (2010. 12. 1.)
- 헤럴드경제 - 코라오홀딩스 상장기념식 (2010. 11. 30.)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담당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구상수 회계사

Jipyong & Jisung

(업무동향)

정책금융공사 대리하여 국적취득부나용선구조의 선박금융거래 성사

지평지성이 지난 10월 정책금융공사를 대리하여 장금상선이 중고 벌크캐리어 1척을 인수하는 국적취득부나용선구조의 선박금융거래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정책금융공사가 대출참여형식이 아닌 단독대출을 통해 기존은행들이 취급하던 선박금융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첫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평지성은 대주인 정책금융공사를 위하여 대출계약서, 관련 담보계약서 및 선박인도에 필요한 모든 제반 절차와 서류를 검토하고, 대주를 위한 저당권과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검토와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강울리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임주영 호주변호사

Jipyong & Jisung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주)디오를 대리하여 덴츠플라이로부터 6,400만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 성사

지평지성이 코스닥기업인 (주)디오를 대리하여 덴츠플라이에게 CB를 발행하고 구주를 매각하여 6,4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덴츠플라이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나스닥 상장업체로 시가총액 5조 원대의 세계 치과재료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주)디오는 독일 투자법인(Dentsply GmbH)을 통해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중견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디오(주)는 향후 덴츠플라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자사 제품을 세계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 한국일보 - (주)디오, 700억대 외자유치 성공 (2010. 12. 9.)
- 한국경제 - 디오, 獨기업과 6400만달러 투자 계약 (2010. 12. 10.)

[담당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길영민 변호사

윤재민 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임주영 호주변호사

호주변호사

Jipyong & Jisung

(업무동향)

미래에셋캐피탈을 대리하여 금융기관 최초로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설립인가 획득

지평지성이 지난 11월 22일 미래에셋캐피탈을 대리하여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파이낸스 컴퍼니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인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캐피탈은 2011년부터 '미래에셋 파이낸스 컴퍼니'를 설립하고 파이낸스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파이낸스 컴퍼니는 여신업무뿐 아니라 부분적인 수신업무와 카드사업도 할 수 있어 베트남에서 전망이 밝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 인가를 받은 외국계 파이낸스 컴퍼니는 유럽계 3개 회사와 일본계 1개 회사 등 4개 회사 밖에 없었습니다. 인가기관인 중앙은행의 비공식적인 입장은 국가를 불문하고 1년에 매우 소수의 회사에만 인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계 파이낸스 컴퍼니 1개사가 2010년 상반기에 이미 인가를 받아 2010년 내에 설립인가를 추가로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캐피탈이 한국계 금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파이낸스 컴퍼니 설립인가를 받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파이낸셜뉴스 - 미래에셋캐피탈 베트남 인가 획득 (2010. 11. 23.)
- 한국금융신문 - 미래에셋캐피탈, 베트남 파이낸스컴퍼니 설립 인가 획득 (2010. 11. 25.)

[담당변호사]



변희경 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

Jipyong & Jisung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호주 로펌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자문 중

지평지성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형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소위 'REITs')가 진행하고 있는 호주부동산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국내법적 문제에 대해 부동산 매도인을 대리하는 호주 로펌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구조는 국내 부동산투자회사가 호주에 SPC를 설립한 후 그 SPC의 주식을 취득하고, SPC는 납입된 투자금으로 호주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간접적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중 해외부동산개발을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며, 간접적 방식에 의한 해외부동산개발투자도 진행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구조의 해외부동산투자가 성공한다면 그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Jipyong & Jisung

(업무동향)

IBA 동경국제포럼에서 '한국에서의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방법'을 주제로 발표

지평지성 IP·IT 팀의 김범희 변호사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 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Forum에 참가하여, 'How to effectively protect you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IBA는 최대 규모의 국제 변호사 교류단체로서 이번 동경 포럼에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호주, 홍콩 등 30여 개 국에서 2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참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국제거래, 공정거래, M&A, 중재 등의 분야에서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범희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한국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의 개요(General Overview of Intellectual Properties Protection System in Korea), 침해 구제수단과 담당기관(Remedies and Entities related to IP Protection), 침해에 대한 배상(Compensation of Damages for Losses from Infringement), 지적재산권 분야의 현황(Current Trend in the IP field in Korea), 한국에서의 IP 분쟁 관련 쟁점(Current Issues of IP Dispute in Korea) 등 총 5개의 주제에 관한 발표를 하였는데, 한국의 특허 출원과 소송 현황에 관련된 최신 데이터 및 지적재산권 분쟁에서의 높은 특허 무효율과 절차 지연, 적은 배상액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소개하였고, 외국의 권리자가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관련링크]

- [2nd Asia Pacific Regional Forum Conference: Asia after the GFC Leading the Global Recovery\(17 - 19 November 2010, Tokyo International Forum, Tokyo, Japan\)](#)

[담당변호사]



김범희 변호사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2010 사랑의 연탄 나눔' 참여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전문가 및 임직원 30여 명은 지난 11월 27일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http://www.lovecoal.org/) 주관의 '2010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 3, 4동에서 열린 이번 연탄 나눔 행사에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후원 성금을 기부하고, 지역주민 7가구에 총 1,400장의 연탄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2004년 6월 남과 북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005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 <http://www.lovecoal.org/>

[행사 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0 사랑의 연탄 나눔" (2010. 11. 27.)

Jipyong & Jisung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지평지성 단신)

강성, 최진숙, 이소영 변호사 '2010년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아카데미' 참석



(좌 :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중 :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진숙 변호사)

(우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소영 변호사)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최진숙, 이소영 변호사는 지난 11월 20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알레그로룸에서 열린 2010년 인하우스 카운슬포럼 아카데미(IHCF

Academy)에 참석 하였습니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에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의 포럼 소속 사내변호사들이 참석하였고, 지평지성 이소영 변호사는 '브랜드 분쟁 관련 실무 및 최근 경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Jipyong & Jisung](#)

최승수 변호사,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 토론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는 12월 8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 공개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최승수 변호사는 이번 포럼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발생 원천인 '판매용 음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물건이 아닌 파일의 형태로 서비스되는 경우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발전으로 디지털 콘텐츠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콘텐츠 창작에 기여하는 실연자에 대한 권리보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안을 논의코자 마련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연자 보호 방안 논의 (2010. 12. 8.)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단신)

김성수 변호사, 서울고검 송무실무연구회 월례모임에서 '보건의료법 및 노동법 분야의 최근 쟁점'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11월 29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고검 송무실무연구회의 월례모임에 참석하여 '보건의료법 및 노동법 분야의 최근 쟁점'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11월 월례모임에 보건의료법 및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로 김성수 변호사가 선정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고검 송무실무연구회에서는 서울고검 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 소속 검사 및 법무관들이 참여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각 법률실무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Jipyong & Jisung](#)

명한석 변호사, 「2010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원개발사업진출 관련 Country Risk 최소화 방안' 발제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명한석 변호사)

지평지성 명한석 변호사는 지난 12월 2일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주관한 제3회 「2010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자원개발사업진출 관련 Country Risk 최소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였습니다.

서울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자원개발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하였고, 해외자원개발 정책 및 기술동향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단신)

정원 변호사, 경제사학회 주최 연말 학술대회에서 '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발표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원 변호사)

지평지성 정원 변호사는 지난 12월 11일, 경제사학회가 주최한 「한국의 건설업 및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시론」 학술대회에서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서 "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관련링크]

- 경제사학회 홈페이지 - www.kehs.or.kr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JIPYONG & JISUNG

<http://www.jipyong.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1600 Fax : 02)6200-0800

강북 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00-1800 Fax : 02)6200-0830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0880 Fax : 02)6200-0804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Ward 6,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

캄보디아 사무소

SK-Shinah Office,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726-897 Fax : 855-23-726-457

라오스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Laos Tel : 856-20-301-9820 Fax : 856-21-264-344